

## 이것이 알고 싶다

### RG 설계승인 관련

#### 질 의 : \*\*\*

방사선발생장치를 판매하는 회사의 판매 담당입니다.

코엑스에서 3월달에 열리는 국제전시회에 당사에서 판매하는 수입방사선기기의 신규 모델을 전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전시 목적으로 방사선발생장치 1대를 반입하고자 하는데, 설계승인서가 있어야 하나요?

아직 판매에 대한 계획은 잡히지 않았고 전시회 이후에 구매 수요가 있으리라 보는데, 전시회 이후 판매 전에 설계승인을 받아도 됩니까?

#### 답 변 : 이복형(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방사선안전규제부 방사선기기운반규제실)

현행 과학기술부고시 제2005-28호에서는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3조(적용배제) ①시험용으로 시제품을 개발하거나 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비영리 단체의 학술연구를 위하여 사전에 방사선기기의 설계, 구매, 제작(또는 개조), 설치, 운영절차 및 안전관련 품목의 품질기준을 안전관리규정에 포함하여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 허가된 범위에서 자체제작(또는 개조)하는 방사선기기는 영 제200조의4제2항 및 제200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승인 및 검사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방사선기기는 해당 시설의 일부로 간주한다.

②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허가를 받은 특정 판매업자에게 독점 공급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방사선기기로서, 일반 인에게는 특정 판매업자의 명의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특정 판매업자에게만 형식승인을 적용하여 중복적용을 배제한다.

제29조(방사선기기의 종류) 설계승인을 받아야 하는 방사선기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방사선기기가 독립적인 기기 형태가 아닌 사용시설 구조물의 일부로서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위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현재 원자력법 제72조 규정에 의한 방사선기기설계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아울러, 귀 사의 경우와 같이 방사선기기의 판매와 사용이 아니라 전시를 목적으로 단기간 국내에 반입되는 방사선기기의 경우 전시공간에서의 기기가동을 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수입요건확인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